2014년 3월 1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www.smba.go.kr
* 통신 · 방송 · 인터넷은 3월 16일(일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보 도 자 료

성장 청검 다리 중소기업청 Small &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

• 문의 : 중기청 재도전성장과 노용석 과장(042-481-6840), 우창훈 사무관(6846)
중진공 사업전환센터 이경돈 센터장(02-769-6660) 김희수 팀장(6661), 박태진 대리(6804)

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실패비용 최소화 및 효율적인 기업회생 지원
- 중소기업 진로제시 및 회생컨설팅 사업 본격 시행 -

□ 중소기업청(청장 한정화)과 중소기업진흥공단(이사장 박철규)은 **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**으로 **신속한 사업정리로 실패비용을 최소화**하고,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**조기 회생절차 진입을 유도**하여 **효율적인 기업회생을 지원**하는 "중소기업 재기컨설팅 지원사업(진로제시 및 회생컨설팅)"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동 사업은 '13년 **법원(서울중앙지법)과의 협업을 바탕**으로 **시범 도입**되었으며,

○ 회생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은 컨설팅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및 회생계획안 작성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감소로 **회생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**(종전 9개월 → 개선 후 6개월)되었고,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을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**정부에서 지원(업체당 최대 3천만원)**받을 수 있어 **실질적인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**를 가져왔다.

□ "진로제시컨설팅"은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**기업에 대한 심층진단**을 통해 해당 기업의 **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*** **제시**한다.

* 구조개선(사업전환, 워크아웃 등), 기업회생(회생컨설팅), 사업정리 등

○ 특히, 올해부터는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재무분석뿐 아니라 **업종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**하여 **기술·사업성 분석**을 통해 **기업의 회생 가능성에 非재무부분이 반영**될 수 있도록 **개선**하였다.

○ **지원대상**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'진로제시 컨설팅 처방'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이자보상배율 1이하 등의 경영위기 기업이며, 업체당 최대 240만원(컨설팅 지원일수 6일)까지 지원한다.

□ 한편, "회생컨설팅"은 기업회생전문가(회계 및 법무법인)가 **회생신청에서부터 회생인가 시까지 전 범위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다.**

○ 또한, 금년부터는 **자산규모 80억 미만 기업의 소규모의 부담 완화**를 위해 **컨설팅 비용 지원비율을 상향**(종전 70% → 90%)하였고, 중소기업의 법률대리인 탐색비용 최소화를 위해 **회생사건 수행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POOL 구성·운영**할 계획이다.

○ **회생컨설팅 지원대상**은 ①진로제시컨설팅 결과 '회생컨설팅 지원가능'으로 판정된 기업과 ②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법원(서울중앙지방법원)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'회생컨설팅 지원가능'으로 판정된 기업이다.

□ 중소기업 재기컨설팅지원사업은 3월 17일(월)부터 **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(www.rechallenge.or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**이 가능하다.

○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우창훈 사무관(☎ 042-481-6846)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박태진 대리(☎ 02-769-680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(참고자료)

1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사업 개요

가. 사업 목적

○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·진단하여 해당 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

* 구조개선(사업전환, 워크아웃 등), 기업회생(회생컨설팅), 사업정리 등

나. 사업 예산 : 총 6억원

다. 지원대상 및 내용

○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의 기업

지원 대상	컨설팅 내용
▪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'진로제시 컨설팅 처방'을 받은 중소기업 ▪ 이자보상배율 1이하(영업이익<이자비용) ▪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업종 참조(공고문 참고)	**[기술사업성 분석]** ▪ 기업 기술경쟁력 분석 ▪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평가 **[재무분석]** ▪ 재무제표 실사 및 추정 ▪ 차입금 상환능력 분석 (청산 및 회생 등 기업의 진로를 제시) ▪ 심층분석 (회생인가가능성 분석)

라. 지원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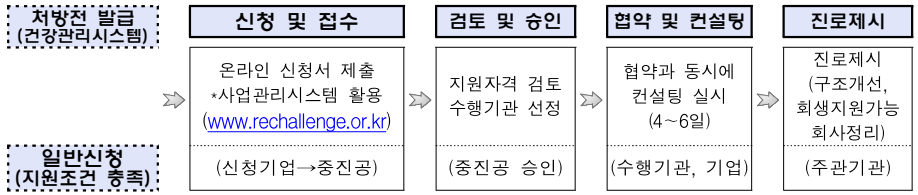
○ 지원조건 : 총 컨설팅 지원일수 6일, 최대 240만원 지원

분야	최근1년 내 건강진단 미수행한 경우		최근1년 내 건강진단 수행한 경우	
	일수	보수액	일수	보수액
재무분석	3일	150만원	3일	150만원
사업성 분석	3일	90만원	1일	30만원

* 진로제시컨설팅 신청일 기준 1년이내 건강진단을 수행한 경우에는 재무분석을 수행하는 컨설턴트가 중진공 건강진단보고서를 참조하여 기술사업성 평가를 동시수행가능

* **컨설팅 부가가치세(비용 10%)는 기업이 부담**

마. 진행절차



* 지원 대상(조건)에 포함될 경우 처방전 없이도 신청가능

< 구조개선 필요기업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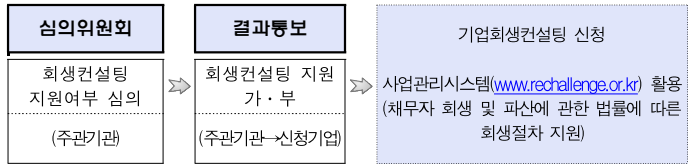
▶ 자구적으로 경영위기 극복이 가능한 기업

▶ 사업전환, 긴급경안자금, M&A, 유휴자산매각 등 지원정책 세부상담

< 사업정리 필요기업 >

▶ 폐업, 파산, 재기교육(힐링캠프),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사항 안내

< 회생계획인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 >



▶ 조기에 법원의 '회생절차'에 진입하도록 유도하고, 회생계획인가 시까지 회생컨설팅을 지원

▶ 기업회생컨설팅 사업의 경우 '14년 예산 소진 시 지원불가

2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 개요

가. 사업 목적

○ 경영위기에 직면한 **중소기업의 법적 회생을 지원**하여 **신속한 경영 정상화 및 효율적 회생을 지원**

나. 사업 예산 : 총12억원

다. 지원 대상

○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진로제시컨설팅사업*에 참여한 기업으로 컨설팅 결과 '회생컨설팅 지원가능'으로 판정된 기업

* 진로제시컨설팅 :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·진단하여 사업정리 또는 회생 등 향후 진로를 제시해 주는 사업

○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, 회생컨설팅 사전평가*를 통해 '회생컨설팅 지원가능'으로 판정된 기업

* 회생컨설팅 사전평가 : 위의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기업회생컨설팅을 희망하는 경우 전문가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회생컨설팅 지원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

※ 지원제외 :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되거나 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기업(공고문 참고)

라. 지원 내용

○ 범위 : 회생신청부터 회생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·자문 등

○ 비용 :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원

* 컨설팅 범위 등에 따라 한도액 및 지원 비율 차등적용

○ 기간 : 협약일로부터 9개월(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)

마. 기업회생컨설팅 진행절차

신청·접수 (회생컨설팅 사전평가)	⇒	컨설팅 승인	⇒	수행기관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	⇒	협약체결	⇒	기업부담금 납부	⇒	컨설팅 실시
온라인 신청서 제출 *사업관리시스템 활용 (www.rechallenge.or.kr)		컨설팅 승인		수행기관선정 및 협약서류 제출		지원기업/ 수행기관/ 주관기관		부담금 납입 및 증빙서류 제출		중간점검, 완료점검
신청기업→ 중소기업진흥공단		중소기업 진흥공단		(신청기업/중진공) 수행기관→중진공		중소기업 진흥공단		신청기업→ 수행기관, 중진공		중소기업 진흥공단

* 수행기관(회계법인+법무법인) 선정

* 협약체결 : 컨설팅 승인 이후 4자(기업, 수행기관, 중진공) 협약체결